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저생계비 압류방지계좌 개설 근거 마련 >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79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최저생계비 압류방지계좌 개설 근거 마련 ····· 3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4

1) 농림축산식품부 ····· 4

2) 법원행정처 ····· 4

3) 금융위원회 ····· 4

4) 농협중앙회 ····· 5

나. 검토의견 ····· 5

1) 압류금지채권 현황 및 개정안의 취지 ····· 5

2) 개정안의 취지 달성을 위한 입법 방식 검토 ····· 10

3) 개정안 수용 시 고려사항 ····· 12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1. 1.
3. 회 부 일 : 2024. 11. 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제106조의2 및 제134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최저생계비 압류방지계좌 개설 근거 마련

개정안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에 최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3(생계비계좌) ① 지역농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지역농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신 설>	제106조의2(생계비계좌) ① 지역축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역축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현 행	개 정 안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지역축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신 설>	제134조의6(생계비계좌) ① 중앙회는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신 설>	제109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목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상호금융 고객의 최저생계비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압류금지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최저생계비 압류금지계좌 개설은 전 금융기관에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 관련 개별법에 각각 명시할 경우 해당 법률의 동시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는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지역농축협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품목조합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입법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개정안에 따른 '생계비계좌'라는 명칭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조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 개설을 통해 국민의 기

본적 생계유지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있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등 고려시 「민사집행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4) 농협중앙회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관련 계좌 개설은 민사집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는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지역농축협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품목조합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비 계좌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1) 압류금지채권 현황 및 개정안의 취지

채권의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예금 등의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으면 은행 등은 채무자인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1].

다만, 「민사집행법」은 부양료, 퇴직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공익적 또는 사회정책적 사유가 있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2]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3]에 따르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185만원으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별 금융기관 1곳에 예치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185만원을 의미[4]하는 것임.

한편, 이와 유사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5]을 두고 있음.

---

1) 채권에 대한 압류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하고, 해당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접수해 등록·실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 7. <생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후략>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후략>
4) 대법원 2024.2.8. 2021다206356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및 근거 법령]

구 분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법률상 압류금지채권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35조2항) ■ **「국민연금법」**: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58조3항) ■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38조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88조3항) ■ **「의료급여법」**: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18조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등 다수(27조 22항)

※ 자료: 관련 법률 재구성

또한, 압류금지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개별 법률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별도의 계좌, 이른바 '압류방지통장'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6].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법상 압류방지채권 및 압류방지통장의 근거]

법률	전용계좌	압류금지 예금채권	통장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만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27조의2)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제35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법	급여만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제58조제3항)	국민연금 안심통장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만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제38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험급여만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82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제88조제3항)	행복지킴이 통장
의료급여법	요양비등만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12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제18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한부모가족 지원법	복지급여만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12조의5)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제27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 주: 행복지킴이 통장: 보건복지부 주관의 금융권 공통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12.5)

그런데 같은 압류금지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하 '1개월치 생계비'라 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은행 등은 일반 예금계좌에 입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금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 전부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고 있어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정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출금 현황 등의 조회가 불가능하여 특정 예금 채권의 '1개월치 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따라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서 보장하는 '1개월치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법원의 압류명령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2주일에서 1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의 생계비'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채권추심[7]으로부터 채무자 생계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실여급여 등의 수급권자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7)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압류금지통장의 개설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을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예금 압류 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생계비를 돌려받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압류방지통장 외 나머지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여 추심행위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와 개정안 수용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개정안의 취지 달성을 위한 입법 방식 검토

먼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근거를 ① 「민사집행법」에 규정하여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농협 등 예금취급기관 전체에 일괄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②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각각에 개별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예금취급기관은 통상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구분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나 보다 제한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구(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8]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을 포함하여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총 9건의 개정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민사집행법」을 포함하여 같은 취지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음.

[압류방지통장 개설 근거 마련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예금취급기관	개정안명	발의자	발의일	소관 상임위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의원	'24.9.23	법제사법위원회
은행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4.5.31	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24.11.1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위원회
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우체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압류금지 채권과 압류금지 계좌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8) 한국의 금융제도, 2018, 한국은행

제95조[9]는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보임.

3) 개정안 수용 시 고려사항

다음으로, 개정안 수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월치 생계비에 대한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각 금융기관 간 계좌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예금취급기관을 아우루는 통합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 간 계좌조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예금취급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다른 예금취급기관 모두에 공문을 발송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 후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음.

---

9)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후략>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그런데 현재 예금취급기관 '법인'수는 은행 53개, 상호저축은행 79개, 농협 1,111개 등 총 3,627개에 이르고 있어 계좌조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예금취급기관 현황]

('24년 6월말 기준)

구 분	기관명	법인수	지점수	비 고
은 행	국내은행	20	5,731	
	외은지점	33	39	
상호저축은행	-	79	265	
신용협동기구	신협	866	1,696	
	새마을금고	1,284	3,269	
	농협	1,111	4,897	
	수협	91	527	
	산림조합	142	181	금융사업은 141개 법인 수행
우 체 국	-	1	2,421	<출처 : 우체국예금 경영공시>
종합금융회사	-	-	-	'24년 6월 우리종합금융 해산
합 계	-	3,627	19,026	-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참고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56조제4항[10]에 따라 금융기관 간 1인 1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택처약 공동이용업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서는

10)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11] 등에 근거하여 세금우대저축한도를 조회하기 위한 세금우대 저축한도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금융기관 간 조회 가능한 제도 현황]

구 분	주택청약	세금우대
제도명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법적근거	주택법 제56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9조의3
관련내용	입주자저축은 한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음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시스템명	주택청약공동이용업무	세금우대 저축한도 관리시스템
조회범위	1인1계좌 가입여부, 가입금융기관	각 업권별 저축한도 관리에 따라 시스템 조회 범위 설정
시스템 운영주체	한국부동산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범위	<청약수탁은행(입주자 저축취급기관)> 농협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IM뱅크, 부산, 경남(9개 은행)	은행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증권금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19개 업권)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12.5)

둘째,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생계비의 기준은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 「민사집행법」을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민사집행법」을 인용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직접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급여액을 인용한 경우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인용한 사례가 각각 존재함[12].

셋째, 개정안은 생계비계좌 개설 주체로 지역농협뿐 아니라 지역축협 및 농협중앙회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수용 시 농협중앙회는 제외하고 품목조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농협중앙회는 2012년 이 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은행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설립하였는바, 현재 신용사업 및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함.

한편, 일부 품목조합 역시 예금취급업무가 가능[13]하므로 생계비계좌 계설 주체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입법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법 제112조[14]의 품목조합 준용규정에서 개정안 조항을 준용하

---

12)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3) 현행법에 따르면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없으나,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부 신용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은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름.

14)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역축협 역시 별도 조항의 신설이 아닌 제107조[15]의 준용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15)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